

부경대학교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규정

제정 2010. 4. 1 규정 제619호

제정 2011. 3. 4 규정 제65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경영교육혁신을 위한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등의 사업수행 및 연구
2. 경영교육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경영교육관련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경영교육 인증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과 업무) ①센터에는 기획연구부, 콘텐츠개발부, 평가부, 행정실을 둔다.

②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기획연구부는 센터의 장·단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2. 콘텐츠개발부는 경영교육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3. 평가부는 대내·외 평가관련 제반 업무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행정실은 경영교육인증에 필요한 회계와 일반서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경영교육인증을 실시하는 경영계열 학부(과)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에는 부센터장과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센터장과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.

③행정실에는 행정직원, 조교, 계약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④센터장,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부센터장, 각 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으로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) 센터 운영 재원은 국고(보조금), 기성회회계, 연구비, 보조금 등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0. 4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3. 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